

# 자금업무규정

제정 2009. 7. 16. 규정 제14호  
 개정 2011. 1. 17. 규정 제79호  
 [시행 2013.6.10.] [세칙 제52호, 2013.6.10., 타내규개정]  
 [시행 2013.12.9.] [규정 제169호, 2013.12.9., 타내규개정]  
 [시행 2015.1.1.] [규정 제202호, 2014.12.22., 타내규개정]  
 [시행 2015.7.31.] [규정 제226호, 2015.7.31., 일부개정]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자금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인 조달 및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재단고유계정, 학자금대출계정,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, 장학금 지원계정, 인재육성계정, 기부금계정, 수익사업계정 등 재단회계와 그 밖에 수탁 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탁사업회계 등에 적용한다.

②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금융회사 등”이란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2. “여유자금”이란 재단의 사업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 가능한 현금,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말한다.
3. “현금성자금”이란 현금 및 그와 대등한 금융자산으로서 만기 1개월 미만의 투자기한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.
4. “유동성자금”이란 만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투자기한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.
5. “단기자금”이란 현금성자금 및 유동성자금을 말한다.
6. “중장기자금”이란 단기자금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자금을 말한다.
7. “위험”이란 합은 특정한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말한다.
8. “위험관리”란 위험의 발생원인과 규모를 파악, 분석 및 평가하여 위험을 회피,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
## 제2장 자금계획

**제4조(자금계획의 수립)** ① 학자금지원부서의 장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·운용하기 위하여 반기 및 연 단위의 자금계획을 수립한다. <개정 2014.12.22>

② 자금계획에는 자금수지예상과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자금계획상 여유자금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, 자금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금수급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)** 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금운용성과를 측정, 분석하기 위하여 기준수익률을 설정하여 운용한다.

② 목표수익률은 운용상품, 투자기한, 위험한도 및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자금계획 수립 시에 설정한다.

③ 기준수익률은 운용상품과 투자기한에 적합하도록 포트폴리오별로 설정한다.

**제6조(포트폴리오 설정)** 여유자금의 포트폴리오는 상품 및 투자기한별로 설정하여 운용한다.

**제7조(적정유동성)** ① 학자금지원부서의 장은 소요자금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2>

② 적정유동성 규모는 3개월간 자금부족예상액을 최고액으로 하되, 단기차입한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.

③ 유동성 자금은 환금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, 가격변동위험이 크지 않은 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자금의 조달

**제8조(조달원칙)** 학자금지원부서의 장은 재단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금리와 만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2>

**제9조(자금의 조달)** ① 재단은 법 제24조의3, 제26조, 제37조에 따라 각 계정의 재원조성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.

1. 학자금대출계정

가.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

나.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

다. 정부나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

라. 정부가 관리·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

마. 대출계정의 회수금·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

- 바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
- 사.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차입금
- 아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
- 자. 그 밖의 수입금

2.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

- 가.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
- 나. 보증료 수입금
- 다.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
- 라.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
- 마. 정부가 관리·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
- 바.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

3. 장학금 지원계정

- 가.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
- 나. 정부나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
- 다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
- 라.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
- 마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
- 바.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
- 사.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
- 아. 그 밖의 수입금

② 재단은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업어음증권의 만기일은 차기년도 국가 보증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행연도 내로 한다. <개정 2015.7.31.>

**제10조(차입원장의 작성)** 학자금지원부서의 장은 차입품의서 및 계약서류에 근거하여 차입원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2>

**제11조(차입원리금의 상환관리)** 학자금지원부서의 장은 매월 말까지 다음 달에 도래하는 차입원리금의 지급일 및 금액을 기재한 일람표를 작성하여 차입금의 만기일에 차질 없이 상환 또는 연장·갱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2>

**제12조(채권의 발행)** 재단은 법 제18조의 채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

을 받아 공모 또는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31.>

**제13조(사채 원부 등의 작성)** 학자금지원부서의 장은 발행품의서 및 계약서류에 따라 사채 원부를 발행회차 순으로 작성,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2>

**제14조(사채의 등록)** ① 공모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등록 하여야 하며 사모사채는 등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등록된 사채의 증권실물은 발행하지 아니한다.

**제15조(사채의 상장)** 공모사채는 발행 후 한국거래소에 상장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수 기관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.

**제16조(사채원리금의 상환관리)** ① 학자금지원부서의 장은 매월 말까지 다음 달에 도래하는 사채원리금의 지급일 및 금액을 기재한 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채 원리금이 기일에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2>

② 공모사채는 지급대행기관과 체결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사채원리금을 상환하며, 사모사채는 재단이 직접 사채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되 제3자에게 지급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7조(사채등록말소)** 사채원금의 상환 시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채등록말소를 요청한다.

1. 일괄등록된 사채는 사채등록말소를 일괄위임하거나 상환시마다 개별 신청한다.
2. 개별등록된 사채는 상환시마다 채권등록필증을 지급대행기관으로부터 회수한 후, 이를 첨부하여 개별 신청한다.

**제18조(원천징수)**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되, 공모사채의 원천징수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지급대행기관에 위임하고 사모사채는 재단이 직접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4장 자금의 운용

**제19조(운용원칙)** ① 여유자금은 상품별·기간별로 안정성, 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재단회계, 수탁사업회계 등을 각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각 계정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을 통합하여 운용 및 활용할 수 있다.

**제20조(운용방법)** 재단회계, 수탁사업회계 등 각 계정의 자금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
1. 금융회사등에의 예치

2. 국채·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
3.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
**제21조(외부위탁운용)** ① 학자금지원부서의 장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22>

② 외부위탁기관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갖춘 기관(이하 “운용사”라 한다)에 한한다.

③ 위탁운용사 선정, 운용상품,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22조(금융기관 평가 및 선정)** ① 여유자금의 운용대상 금융기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 자체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한다.

② 자체평가는 평점에 따라 A, B, C, D 4등급으로 구분하며, 운용대상 금융기관은 C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금융기관으로 한다. 다만,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A등급, 중소기업은행은 B등급,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B등급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B등급으로 할 수 있다.

③ 자체평가는 상·하반기 연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신용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.

**제23조(국채 등 운용)**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지급보증한 채권은 운용한도와 관계 없이 운용할 수 있다.

**제24조(금융기관별 운용한도)** ① 여유자금의 금융기관별 운용한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별 운용한도와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.

1. 콜론과 외부위탁 운용자금
2. 사용이 제한된 자금
3. 금융기관의 평가등급 변동에 따른 예치한도 초과자금
4. 단순한 현금성 자금의 출납을 위한 요구불성 예금
5.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

**제25조(유가증권 운용)** ① 유가증권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발행주체 및 투자 기한 별로 분산하여 운용한다.

② 수익증권의 운용한도 및 운용기간은 자금수급과 금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**제26조(자금운용 성과평가 등)** ① 자금운용 성과평가는 연간 및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.

② 자금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, 학

자금지원부서의 장은 그 평가결과를 「한국장학재단 정관」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자산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2>

## 제5장 삭제 <2013.6.10>

### 제1절 삭제 <2013.6.10>

제27조 삭제 <2013.6.10>

제28조 삭제 <2013.6.10>

제29조 삭제 <2013.6.10>

제30조 삭제 <2013.6.10>

제31조 삭제 <2013.6.10>

### 제2절 삭제 <2013.6.10>

제32조 삭제 <2013.6.10>

제33조 삭제 <2013.6.10>

제34조 삭제 <2013.6.10>

## 제6장 위험관리

제35조(위험한도 관리) 예치금 및 유가증권은 학자금금융연구소에서 정한 신용위험 및 시장 위험 등의 위험한도를 준수하여 운용한다. <개정 2013.12.9, 2014.12.22>

제36조(신용위험관리) ① 여유자금은 투자대상기관의 신용도, 업종 등을 감안, 분산 운용하여 운용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한다.

②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적용은 전문신용평가기관이 최근일 현재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.

제37조(시장위험관리) 시장위험은 운용상품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, 주가, 환율 등의 시장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8조(유동성위험관리) ① 단기 유동성자금의 과다보유로 인한 수익저하 또는 과도한 단기 자금 조달로 인한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구조를 설정하여 분산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유동성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유동성위험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

여야 한다.

**제39조(운영위험의 관리)** 학자금지원부서의 장은 자금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련 법률 및 제 규정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2>

부칙(제정)

이 규정은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정)

이 규정은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세칙 제52호, 2013.6.10> (회계규정 시행세칙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및 제3조 생략**

**제4조(다른 내규의 개정)** 자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(제27조부터 제34조까지)을 삭제한다.

부칙 <규정 제137호, 2012.8.31> (직제규정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생략**

**제3조(다른 내규의 개정)** ① 생략

② 자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 중 “미래전략부”를 “창조평가연구부”로 한다.

③부터 ④까지 생략

부칙 <규정 제202호, 2014.12.22> (직제규정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4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생략**

**제3조(다른 내규의 개정)** ①부터 ⑬까지 생략

⑭ 자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, 제7조제1항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3조, 제16조제1항, 제21조제1항, 제26조제2항, 제39조 중 “재무관리부”를 “학자금지원부”로 한다.

제35조 중 “창조평가연구부”를 “학자금금융연구소”로 한다.

⑮부터 ㉓까지 생략

부칙 <규정 제226호, 2015.7.31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